

반려동물 보호자가 행할 수 있는 자가처치 범위 사례집

농림축산식품부

I. 배경

- 최근 동물은 과거와 달리 더 이상 물건이나 인형이 아니고 생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, “모든 종류의 동물은 학대 받지 않고 생명으로서 그 가치가 존중받아야 한다.” 라고 사회적·국민적 인식도 변화하고 있음
- 특히,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며 생명으로서 그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으며, 반려동물을 기르는 동물보호자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가족 구성원이며 사람의 아이와도 같이 사랑받고 길러지고 있음
- 하지만, 지난 '16년 5월부터 여러 언론 등을 통해 동물보호자의 무분별한 수술, 주사 등 진료행위로 인한 동물학대(일명, 강아지공장 사건)가 보도된 이후 동물보호단체,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무자격자의 수술 금지 등 '자가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(일명, 자가진료) 제한'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가 있음
- 이에 따라,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'16년 12월 30일에 자가진료를 예외로 허용해 놓은 수의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, 앞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보호자라할지라도 동물에 위해가 되는 처치행위는 할 수 없고, 일정 수준 이상의 처치행위를 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사회상규에 위배되어 처벌이 될 수 있음
-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'동물보호자가 어느 정도까지 처치가 가능한지에 대한'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 '사례집'을 작성하여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함

II. 범위와 기준

- 본 '사례집'은 동물복지 선진국가인 미국, 유럽 등 외국사례에서의 동물보호자 처치수준, 전문가 의견, 국내 동물보호자 등 일반국민의 정서와 공감대, 변호사 자문 등을 참고하여 사회적 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와 수준으로 검토하였음
- 본 '사례집'이 유사한 유형의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참고가 되고, 사례마다 구체적 조건 및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, 앞으로 실제 사건에서의 판례 등을 통해 합리적 기준으로 정착 될 것임
- 본 '사례집'이 전문가를 통한 적정 진료로 동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, 동물을 생명으로서 인식하고 대우하는 선진 동물복지 문화 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함

III. 사례집

• 동물에 대한 진료는 사례별로 위험도가 다를 수 있기에 해외사례* 변호사 자문 등을 고려하여 국민이나 동물보호자가 공감하는 범위에서 허용

* 해외사례는 자가진료를 제한하고 있는 동물복지 선진국가인 미국, 영국 등에서 허용되는 수준을 검토함

1 원 칙

- 기본적으로 동물보호자는 수의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동물에 위해가 되는 처치행위는 할 수 없으나, 자신이 기르

는 동물의 생존권과 건강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'선의의 목적'을 가지고 동물에 대한 약의 사용 등 일정수준의 처치는 할 수 있음
■ '동물보호자'는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제한되며, 동물보호자의 자격이나 권리를 제3자 등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음

2 사례

Q 1. 동물보호자가 약을 먹이거나 연고 등을 바르는 수준의 투약 행위는 가능한가요?

- 처방 대상이 아닌 동물약품은 수의사의 진료 후에 약을 받아서 투약 또는 동물약품판매업소 등에서 직접 구입하여 투약할 수 있음
- 처방대상 동물약품은 수의사의 진료 후에 약을 받아서 투약하거나 해당 동물병원으로부터 처방전을 발급받아 동물약품판매업소 등을 통해 구입 후에 사용할 수 있음
- *cf) 처방대상 동물약품 중 일부제제는 구입 시 처방전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음

※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
 *동물용의약품 중 동물 및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약제특성이나 투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사용상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약품으로써 수의사의 직접 진료 후에 수의사에게 직접 조제·투약을 받거나 처방전을 발급받아 동물약품판매업소 등을 통해 구입 후 투약해야 함
 ▶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종류에 관하여는 수의사나 약사에게 상담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(☎ 044-201-2372~2373)에 문의바람

Q 2. 동물보호자가 처방대상이 아닌 약을 구입하여 행하는 투약행위는 가능한가요?

- 동물의 건강상태가 양호하고, 질병이 없는 상황에서 처방대상이 아닌 예방목적의 동물약품을 동물약품판매업소 등에서 구입하여 행하는 투약행위는 인정되나, 동물약품의 종류에 따라 부작용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수의사가 하거나 수의사의 처방을 따르는 것을 권고 함

의료법 참고판례
 *행위의 위험성 정도, 일반인들의 시각, 행위자의 동기·목적·방법·횟수, 행위자의 지식수준, 시술행위로 인한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지 여부를 판단(대법원 2002.12.26. 선고 2002도5077 판결, 대법원 2004.10.28. 선고 2004도3405 판결 등)

- 동물이 건강하지 않은 상황이나 질병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예방목적이 아닌 동물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이나 지도 없이 일시적으로 혹은 지속적으로 투약하는 경우는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음

Q 3. 동물보호자가 수의사의 진료 후 처방과 지도에 따라 행하는 투약행위는 가능한가요?

- 수의사의 처방과 지도에 따라 동물약품판매업소 등에서 동물약품을 구입하여 투약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음
 다만, 기본적으로 약물의 주사투약은 먹이는 방법에 비해 약물을 체내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으로 약제의 흡수속도가 빠르고, 잘못된 접종에 의한 쇼크, 폐사, 부종 등 부작용이 있으며, 시술 후 의료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공중보건학적인 문제는 물론 사회적 문제도 야기될 수 있으므로 수의사의 진료 후에 수의사에 의해 직접 행하는 것을 권고함을 권고함

Q 4. 동물보호자는 그 밖에 어떤 처치행위가 가능할까요?

- 그 밖에 동물에 대한 수의학적 전문지식 없이 행하여도 동물에게 위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처치나 돌봄 등의 행위는 인정됨
 *(예시) 통상적인 외부 기생충 구제, 단순 귀 청소·세척 등